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 2. 가입나이

최초계약 : 만15세 ~ 65세

갱신계약 : 만15세 ~ 70세

## 3. 보험기간

1년만기 자동갱신

##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 5.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6.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 없음

##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8.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만원)는 재해사망 1,000만원으로 함

## 9. 기타

### 가. 대상단체 및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 1) 대상단체

이 보험의 대상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2)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1)’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1) 대상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 **다. 보험료의 계산**

1)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 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① 평균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또는 갱신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①’의 평균보험료율 또는 평균나이보험료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 나이별 보험료율, 평균보험료율 및 평균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우량단체에 대한 보험료 환급**

사고율이 낮은 우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환급하여 준다.

##### **1) 환급대상**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이고, 매 보험기간 말 위험률차익이 발생하는 단

체를 대상으로 한다.

## 2) 환급률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	환급률
100명 ~ 299명	30%
300명 ~ 499명	35%
500명 ~ 999명	40%
1,000명 ~ 1,999명	45%
2,000명이상	50%

## 3) 환급액

매 보험기간 말에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의 순보험료(특약순보험료 포함)에서 미경과보험료환급금 및 지급보험금을 뺀 금액(위험률차익)에 대하여 '2)'의 환급률과 위험률차익  
 $(=\frac{\text{위험률차익}}{\text{위험률차익} + \text{지급보험금}})$ 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환급한다.

$$\text{환급액} = \text{위험률차익} \times \text{환급률} \times \text{위험률차익률}$$

다만, 우량단체에 대한 보험료 환급일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실적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액과 새로운 보험금 지급실적을 반영하여 계산된 환급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일시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마. 고액계약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정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 1) 할인대상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인 단체로서 동일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환산 연납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가 2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 2) 할인률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환산 연납 영업보험료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명)				
	1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0%	7.5%	9.0%	10.5%	12.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7.5%	9.0%	10.5%	12.0%	13.5%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9.0%	10.5%	12.0%	13.5%	15.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5%	12.0%	13.5%	15.0%	16.5%
1억원 이상	12.0%	13.5%	15.0%	16.5%	18.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에 제2)항의 할인률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text{할인액} = \text{영업보험료(독립특약 포함)} \times \text{할인률}$$

$$(주) 환산연납영업보험료 = \frac{\text{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 포함)}}{k}$$

단, k는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k	0.0849	0.2538	0.5049	1

## 바.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자동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 ①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때
  - ②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수가 회사가 정한 수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 중 '2. 가입나이'에서 정하는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3)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경

-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단,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 할 수 없다.)
- 2)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아.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

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자.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